####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18호

#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'도시정비법')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6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
- 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-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 적(㎡)	비고
신설	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	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	17,714.1	-

 <sup>※</sup> 본 정비구역은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
 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
#### 2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고
합 계		17,714.1 100.0		-
정비기반시설	소 계	900.4	5.1	-
<del>Ц</del>	도로	900.4	5.1	-
	소 계	16,813.7	94.9	-
획 지	획 지1	11,171.0	63.1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획 지2	5,642.7	31.8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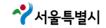


- 3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- 가.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
- ※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구 분		항목		금 액(천원)			
		소 계		521,171,330			
	분양주택	토지등소유자	334세대	369,477,900			
		일 반	119세대	145,469,000			
	공공임대	의무임대주택	52세대	6,510,000			
수 입	55 <b>1</b> 4	공공임대(기부채납)	17세대	-			
	기티시서	그리새하니서	토지등소유자	-			
	기타시설	근린생활시설	일 반	-			
		매출부가세		-285,570			
		기타수입		-			
		소 계		235,303,483			
		공사비		176,242,279			
		보상비		9,977,880			
지 출		관리비		4,164,207			
시절		설계비		2,937,371			
		감리비		4,406,057			
		부대경비		26,845,898			
		예비비		10,729,791			
		종전자산 추정액	293,289,200				
추정비례율	97.47% = {총수입(521,171,330천원) - 총지출(235,303,483천원)} ÷ 종전자산(293,289,200천원)						

## 나.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

비게유 벼:	비례율 변화표		공사비						
비네걸 한			-10%	-5%	0%	5%	10%		
변동률		평균단위단가 (천원/3.3㎡)	6,480	6,840	7,200	7,560	7,920		
	10%	45,100	120.66%	117.65%	114.65%	111.64%	108.64%		
분양가 (34형 일반분양기준)	5%	43,100	112.11%	109.11%	106.10%	103.10%	100.09%		
	0%(기준)	41,000	103.48%	100.47%	97.47%	94.47%	91.46%		



иілі Онд	비례율 변화표		공사비						
미네팔 건.			-10%	-5%	0%	5%	10%		
	-5%	39,000	94.89%	91.89%	88.88%	85.88%	82.87%		
	-10%	36,900	86.25%	83.24%	80.24%	77.23%	74.23%		

#### 4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		면 적(m²)	비율	비고	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(%)	ηΨ
	합 계	17,714.1	-	17,714.1	100.0	-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7,714.1	-	17,714.1	100.0	-

- 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- 가. 교통시설
- 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# 보   기 L   연장   기		기		기		기		기저 조저 사용		사용	주 요	최초	비고
ŤΞ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기 능	(m)	71音	10	형태	경과지	결정일	미고				
기정	중로	2	(1)	15	국지 도로	220 (52)	구로동 50-1	구로동 50-6	일반 도로	-	-	기타 도로시설				

- ※ ( )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
- 6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	시설의 종류		면 적	(m²)			
			법정	계획면적(m²)	비고		
			기 준	면 적(m²)	계속한국(때)		
	합계	-	1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(522세대×2.5㎡×1.25)	1,631.25	2,620.21		
	경로당	획지	500~1,000세대 미만	330.00	340.00	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 기준	
l	어린이집	획지	500~1,000세대 미만	330.00	375.00	그네] 기판	
주 민 공 동	작은도서관	획지	500~1,000세대 미만	158.00	178.00		
시설	주민운동시설	획지	500세대 이상	_	210.35		
	다함께 돌봄센터	획지	500세대 이상	66.00	389.95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기준	
	어린이놀이터	획지	150세대 이상	722.00	723.53	22 1103 712	



	시설의 종류		면 적			
			법정	계획면적(m²)	비고	
			기 준	면 적(m²)	계획변역(M <sup>*</sup> )	
	주민공동시설	획지	-	-	403.38	
부 대 시 설	경비실	획지	-	-	33.00	
시크	관리사무소	획지	10 m²+[(522-50)×0.05 m²]	33.60	222.00	

- ※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4 및 별표1,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8조 및 제55조의2 ※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

#### 7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	구역	구분	획지	구분	정비개량계획(동)						
구분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위치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비고
신설	구로우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7,714.1	-	-	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원	3	-	-	3	ı	-

#### 8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가.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	분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	용적률	높이(m)
干世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ΠΛ	⊤선 5エ	(%)	(%)	(최고층수)
	구로우성 아파트 재건축 17,714		소계	16,813.7	ı			300 이하	-
신설		17,714.1	획지1	11,171.0	구로구 구로동 23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 이하		121.5m (39층)이하
	정비구역		획지2	5,642.7	구로구 구로동 24번지	1 1979/12			83m (25층)이하
	■ 초 내대스 : 고토즈테 [20세대/기보레나 이대즈테 17세대 그미즈테그미 [20세대/								

- 총 세대수 : 공동주택 522세대(기부채납 임대주택 17세대, 국민주택규모 52세대)
- 전용 60m² 이하 : 258세대
- 전용 60m² 초과 ~ 85m² 이하 : 228세대
- 전용 85m² 초과 : 36세대
-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계획(전용면적 기준)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
59.98 m²	80.93 m²	17	1,375.81 m²
합	Й	17	1,375.81 m²

•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(전용면적 기준)

7 8	전용면적		HIO(0/)		비고		
구 분	(m²)	분양	기부채납임대	국민주택규모 주택	미혈	비율(%)	
60m²이하	44 m²	32	-	20	10.0	49.4	-

78	구역구	분	가구 또	는 획지구분	01-1		X EI O I	_	 건폐율	용적률	높	0 (m)
구분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위치		주된 용도	ī	(%)	(%)		고층수)
		구분	전용면		•	세	대수(세대)			비율	:(%)	비고
		1 5	(m²)		분양	기	부채납임대	국민주	주택규모 주택	112		-1-
			59 m	įž	164		17		25	39.4		
		60㎡초과~	74 m	į.	42		-		5	9.0	43.7	_
		85m²이하	84 m	i <sup>2</sup>	179		-		2	34.7	40.7	
		85㎡·초과	95 m	2	33		-		-	6.3	6.9	_
		00川 五五	126r	m²	3		-		-	0.6	0.9	
		ōl	합계 453 17 52				100.0		_			
					522 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							
1	심의완화사항	- 기준용적률 (인센티브 형 · 국민주택규모	<ul> <li>허용용적률 20% 완화 [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28.6% (사업성보정계수 적용)]</li> <li>기준용적률 210% → 238.6%</li> <li>(인센티브 항목: 열린단지 5%, 돌봄시설 5%, 층간소음해소 5%, 방재안전 5%)</li> <li>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(「도시정비법」 제54조)</li> <li>상한용적률 252.6% → 법적상한용적률 300%</li> </ul>									
건축물9	의 건축선 등에 관한	건축한계신 (건축한계선으로		획지1	∘ 공원로 : [	내지경계	·로 : 대지경계선 선으로부터 6m \ 경계선으로부E	이상				
	계획	전면공지는 보도.		획지2	∘ 대상지남측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∘ 새말로, 새말로16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∘ 공원로6가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							
	기타 사항	○ 공개공지 : 새말로 - 공원로변 교차부 ○ 돌봄시설 : 획지1 북측 새말로변 ○ 열린단지 : 담장미설치에 따른 관목 등 식재 불가										

# 나. 용적률 계획

구 분					산 정 내 용					
	TANK	테지어지		기반시설  (m²)	신설	대지 내 용도폐지되는		비기반시설 당공시설 등 E		
토지이용 계획	구역면적 (m²)	대지면적 (m²)	소계	토 지 (도로)	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(㎡)	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(m²)	소 계	토지지분	건축물 환산부지 면 <sup>?</sup>	
	17,714.1	16,813.7	900.4	900.4	900.4	-	861.34	458.63	402.71	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• 순부담면	∘ 순부담률 : 4.86%(구역면적 대비) ∘ 순부담면적 =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국·공유지 +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= 900.4㎡ - 900.4㎡ + 861.34㎡ = 861.34㎡								
	부지(토지 면적	<sup> )</sup>   。기		택 토지지분	면적 = (임대주택 공급연 × 16,813.70 = 458.63	면면적 ÷ 전체 연면적) : 3㎡	× 대지면적			
신설 정비기반시설 + 공공시설 등	건축물 환산부지 면적	• 기부채납 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= 설치비용(원/㎡) × 시설 연면적(㎡) / 부지가액(원/㎡) 건축물 환산부지 설치비용 2.173,000월/㎡ ▷ 2024 분양가산하제 기본형건축비 (`24.10월 기준)								
기준용적률		• 210.00% -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적용								
	- 허용용 ※ 「2030	적률 = 기준 적률 인센티브 서울특별시	보 적용항목 : 도시·주거환	열린단지(5%)	니」 허용용적률 인센티트	봄시설(5%), 방재안전(5	%) ⇒ 20% 적	<del>Q</del>		
	7:		.U-Z.U 🖃 TI)	- 0시시기	<u> </u>	1.40 70			적용값	
허용용적률	공시: 보정:	지가 ※	= 7,192,25 5 서울시 공동 5 기 정비구역 를 기준으로	8원/㎡ / 5,58 주택 평균공시 은 기본계획 J 산정	병균 공시지가 / 대상단자 18,458원/㎡ ≒ 1.29  지가 : 매년 서울시에서 1시 이후(2024)의 최초 : 행 ⇒ 2023년 평균 공시	산정 정비계획 변경(안) 주민공	람의 전년도 공	시지가	1.29	
	대지! 보정계:		적용대상 :	대지면적 2만:	m' 미만 단지(대상지 : 1		l−10,000) ≒ (	0.14	0.14	
	세대 <sup>1</sup> 보정계	걸고	= 261.92%	(가용용적률)	체를 조합원 분양해도 A × 16,813.7㎡(대지면적 344) 수용가능	네대당 평균 전용 85㎡ 경 ) / 110㎡(공급면적)	급도 불가능한	단지	해당 없음	
					성보정계수 (1.0~2.0 범				1.43	
					및 「정비사업 사업성 가 리에서 올림한 값을 적용	선방안 세부기준」의 사 함	업성 보정계수	적용		

구 분	산정 내 용		
상한요적률	◦ 252.64% - 상한용적률(정비계획 용적률) = 최대 허용용적률 + (허용용적률 × 1.3 × α토지 × 가중치 = 238.6% + (230% × 1.3 × 0.028042 × 1 + 230% × 1.0 × 0.024623) = 252.64%	+ 허용용적률 × 1.0 × α건축물)	
(정비계획 용적률)	<ul> <li>가중치 = 공공시설 등 부지 용적률 / 사업부지 용적률 = 250%/250% = 1.0</li> <li>α =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(순부담 면적) /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</li> <li>α 토지 =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면적 /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 면적</li> <li>= 458.63 / (16,813.7 - 458.63) = 0.028042</li> <li>α 건축물 = 공공시설 등 부지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 면적 /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 면적</li> <li>= 402.71 / (16,813.7 - 458.63) = 0.024623</li> </ul>		
법적 상한용적률	∘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∘ 법적상한용적률 300.00% 이하 (건축계획 299.98%)	향후 서울시 건축 심의에서 최종 결정	

- ※ 공공시설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(2024.10.)」 등 관련 기준에 따름
- ※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자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관리청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, 최초 고시대용과 상이할 경우 무상양도 대상 및 면적의 증감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 필요

#### 다.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 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 (처분)하여야 한다.
- 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용적률의 50%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-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, 마감, 생활환경(채광, 조망) 등을 동일(유사)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·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,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, 조합원의 동·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공급 연면적	시설 연면적	비고
59.98 m²	80.93 m²	17	1,375.81 m²	2,220.00 m²	-
합	계	17	1,375.81 m²	2,220.00 m²	-

## ■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계획	획 기준	。 공공주택 (법적상한 용적률을 뺀 용적 。 공공주택은 공공	한용적률 완화) 건설 : 률의 50% 이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;	「도시정비법」에서의 팀 용도	<u></u> 접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	비계획으로 정하여진			
법적상한용	적률(건축계획)	· 299.98% 이하 (†	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	통해 최종 결정)					
	+용적률 획용적률)	• 252.64%							
	용적률 증가분	· 299.98% – 252	.64% = 47.34%						
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	증가된 용적률의 50%	◦ 47.34% × 0.5 = 23.67% ◦ 16,813.7㎡(대지면적) × 23.67% = 3,979.80㎡							
	의무 연면적	· 3,979.80㎡ 이상							
	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			
		44.50m²	61.25m²	20	1,225.00 m²				
국민주택규모	. 주택 확보 계획	59.98m²	80.93 m²	25	2,023.25m²	· 획지			
(향후 건축심의	의에서 최종 결정)	74.98m²	101.82m²	5	509.10 m²	취시 기계			
		84.98m²	114.18m²	2	228.36 m²				
		한비	Й	52	3,985.71 m²	≥ 3,979.80m²			

## ■ 공공주택 혼합계획

건립규모	전체	구성비	조합원 및	기부채납	공공주택 세대수	공공주택 ㅂ	율(%)
(전용면적 기준)	세대수	(%)	일반분양	임대주택	ㅎㅎㅜ씩 세네ㅜ	전체세대수대비	전체비율
합계	522	100.0	453	17	52	10.0	100.0
44㎡ 형	52	10.0	32	-	20	3.8	38.5
59㎡ 형	206	39.4	164	17	25	4.8	48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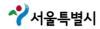
건립규모	전체	구성비	조합원 및	기부채납	고고조태 내레스	공공주택 ㅂ	율(%)
(전용면적 기준)	세대수	(%)	일반분양	임대주택	공공주택 세대수	전체세대수대비	전체비율
74㎡형	47	9.0	42	-	5	1.0	9.6
84m' 형	181	34.7	179	-	2	0.4	3.8
95m' 형	33	6.3	33	-	-	-	-
126m² 형	3	0.6	3	-	-	-	-

9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환경보전	<ul> <li>자연환경: 빗물의 지하 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 면적 최대 반영</li> <li>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</li> <li>녹지면적 증가, 지구 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</li> <li>생활환경: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</li> <li>청정연료(LNG) 사용, 환경정화수종 식재</li> <li>시행 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 면적의 축소</li> <li>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</li> <li>장비 분산투입, 작업장 내 차속 제한, 저소음·저진동 공사장비 투입, 야간작업 지양</li> </ul>	
재난방지	<ul> <li>○ 지반 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 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</li> <li>○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우·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</li> <li>○ 조경 녹음시설을 통한 수례 예방 효과를 기대(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)</li> <li>○ 「건축법」 및 「주택법」의 방화, 소방,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</li> </ul>	

# 나. 환경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의 반영사항	미고
비오톱	비오톱보전 등급 향상	0	비오톱유형평가 4~5등급, 도로 및 개별비오톱 등급은 도로, 평가제외로 조사됨	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	-
생태 네트워크	녹지연결성 확보	0	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수목 외 특별한 수목형태 는 분포하지 않음	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	-
동·식물상	동·식물상보호	0	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·식 물은 분포하지 않음	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	ı
자연환경자산	자연환경 보전	_	계획지구 내 보호지역 없음	-	-
토지이용	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	0	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	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 계획 수립	-
토양	토양오염방지	0	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관련기준 만족	공사시 저감대책 수립	-
지형·지질	지형변화 최소화	0	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	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	-
물순환, 수리·수문	생태면적률 30%	0	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 확인	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률 증 가 계획 수립	-
수질	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	0	주변 수질측정망의 수질 상태 확인결과 BOD 기준 a(매우좋음)~IV(약간나쁨)등급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 상	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공사시 발생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되도록 저감방 안 수립	-
바람	바람길 확보	0	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	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	-
열	열환경 영향 최소화	0	열환경 취약지역 조사	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 용	-
대기질 미세먼지	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	0	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	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 안 수립	-
온실가스	온실가스 저감	0	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	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,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·재생에너지 확보	-
에너지	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0	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	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	-
친환경적 자원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0	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	해당 자치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	_
소음 및 진동	규제기준 만족	0	공사시 소음·진동 영향 예상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	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	-
경관	Skyline 보전	0	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	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	-
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확보	0	계획지구 주변 휴식·여가공간 현황	주민 휴게공간, 놀이터 등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계획 수립	-
일조	일조 침해 최소화	0	계획지구: 제3종일반주거지역 계획지구 인근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 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 지역 등 일부 일조영향 예상	관련규정(「건축법」, 「서울시 조례」)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	-

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의 반영사항	비고
보행 친화공간	보행공간 계획수립	0	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	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	-
전파장해	전파장해 영향 저감	-	해당 사항 없음	-	-
인구	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	-	해당 사항 없음	-	-
주거	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	-	해당 사항 없음	-	-

## 10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그ㅂ	구 분 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
十世		^ ଅଷ୍ଟାଟ୍ୟମ	사립시청에경사	기 존	계 획	즈	비고
신설	재건축 정비사업	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	-	344	522	178	-

## 11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구 분	설계 지침
대상지 북측	∘ 안전펜스(보행자 방호울타리), 도로표지, 안전표지판 및 험프 등 설치
미래초등학교 입지	∘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 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

#### 12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

구 분	설계지침
아파트 주출입구	<ul> <li>● 단지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</li> <li>●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,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</li> <li>● 자연 감시가 낮고 활동 인자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CCTV 설치</li> <li>●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배치</li> <li>● 출입차단기 등 기계 정비를 통한 물리적 접근 통제 및 단지 상징물이나 게이트, 출입구 주변 영역적 패턴 적용을 통한 상징적 접근 통제 등 적용</li> </ul>
아파트 주동 출입구	<ul> <li>○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</li> <li>○ 각 주동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에는 출입자가 쉽게 관찰되도록 높이가 낮은 관목을 설치</li> <li>○ 주동 출입문은 안전유리, 방범필름,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내부 상황이 자연스럽게 파악되도록 함</li> <li>○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출입구에 자동방범키, CCTV, 자동출입문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, 방법설비 표지판(경고문구)을 설치</li> </ul>
부대복리 시설	○ 부대복리시설은 주변 공간에서 감시가 될 수 있는 밝고 개방된 공간에 배치 ○ 단지 내 주 보행로와 연계하여 시설물을 설치, 이용 빈도를 높혀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감시 능력 향상 유도 ○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서,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통행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
경비실	○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○ 경비실 주변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 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○ 경비실 위치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

구 분	설계지침
	• 경비실에 고립 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주차장	○ 주차장 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,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,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○ 차로에는 이동 방향과 경로 및 진출입구 등을 바닥에 반드시 표시하고 벽면, 천장 등에도 안내판을 설치 ○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과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, 천창 등 설치를 권장하고, 주차구확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○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(glare-free) 조명으로 계획
조 경	<ul> <li>단지 내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</li> <li>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.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</li> <li>조명 주변에 식재하는 조경수는 빛을 가지지 않도록 계획</li> <li>단지 주출입구, 부출입구, 주동출입구,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식재하는 조경수는 보행자의 시야가 이동하는 동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함</li> </ul>
담 장	<ul> <li>단지 경계부에 영역성 확보를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담장, 조경 등을 설치하여 자연감시와 가시성을 확보하고, 사각지대 또는 고립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</li> <li>단지 경계부를 시설물 담장 대신 관목이나 수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생하는 수종과 사계절 식생하는 수종을 선택하고, 내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1m~1.5m 이내로 관리</li> </ul>

## 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-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 역 명	위치	면 적(㎡)			
千正	ΤΫΰ	₩ 1	기 정	변 경	변 경 후	· 비고
신설	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	-	증) 17,714.1	17,714.1	-

##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회 위치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•	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=17,714.1㎡	<ul> <li>1985년 준공되어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23년 3월 안전진단 통과로 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재건 축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필요</li> </ul>



-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- 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-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	면 적(m²)	비율	ΗΞ	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(%)	비고
	합 계	17,714.1	-	17,714.1	100.0	-
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		17,714.1	-	17,714.1	100.0	-

- 나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- 1) 교통시설
- 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그ㅂ	규 모			기능	연 장	기 점	종 점	사용	주 요	최초	비고	
구분	급	류별	번호	폭원(m)	기 능	(m)	기급	5 11	형태	경과지	결정일	비꼬
기정	중로	2	(1)	15	국지 도로	220 (52)	구로동 50-1	구로동 50-6	일반 도로	-	-	기타 도로시설

- ※ ( )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
- 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- 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가구 및	도면표시	획 지			비율 (%)	ㅁ
ТЕ	획지	번호	기정	변경	변경후	(%)	비포
	획 지	소 계	-	증) 16,813.7㎡	16,813.7m²	94.9	
신 설		1	_	증) 11,171.0㎡	11,171.0m²	63.1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2	_	증) 5,642.7㎡	5,642.7 m²	31.8	부대복리시설

- 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- 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가 구	용도	비고
신설	용 당 용	획지 1,2	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○ 「주택법」 제2조 제13, 14호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단지 안의 부대시설·복리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	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



- 2)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- 가) 건폐율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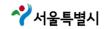
구 분	가구	지 역	건 폐 율	비고
신설	획 지1,2 (공동주택용지)	제3종일반주거지역	50% 이하	-

## 나) 용적률 계획

			용 적	률(%)				
구 분	명 칭	기 준	허 용	상 한		비고		
		기 전	প ত	상 한	법적상한			
	획지1,2 (공동주택 용지)	획지1,2 (공동주택 210% 용지) 이하	238.6% 이하				허용용적률 238.6% 이하	
신설				252.6% 이하	300% 이하	정비계획	상한용적률 252.6% 이하	
	<i>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i>						법적상한용적률 300.0% 이하	

# 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구 분	인센티브 항목		인센티브	비고				
	열린단지	5%	5% ・개방공간,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(위원회가 인정시)					
시선	충간소음해소	5%	∘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 (1등급 5%, 2등급 3%)	· 총 20%				
신설	돌봄시설	5%	∘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 설치·제공(무상임대)	ō 20 <i>1</i> 0				
	방재안전	5%	<ul> <li>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·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· 자문을 통해 적용</li> </ul>					



# ■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

	용적	률완화	
구 분	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(상한용적률)	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(법적상한용적률 300.0% 기준)	비고
신설	14.04%	47.36%	총 61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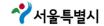
## ■ 높이계획

구 분	적용위치 지 역		적용위치 지 역 높 이 기 준		비고
신설	획지1	제3종일반주거지역	121.5m (39층)이하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<u>1</u> 2	획지2	세시장철리구기자극	83m (25층)이하	ㅎㅎㅜㅋ 못 ㅜ네ㅋ니시걸	

## 다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

1)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 용 위 치		계 획 내 용	비고	
		공원로6가길, 새말로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		
	대상지 남 대상지 남 획 지2 새말로, 새말:	획 지1 공원로	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	
고추하게 A		대상지 남측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,7m 이상	- mil	
건축한계선		대상지 남측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	도면참고	
		새말로, 새말로16길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		
			공원로6가길	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	



- 라. 경관계획(배치·형태 포함)
- 1) 경관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
입면계획	획지1, 2 (공동주택용지)	○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입면디자인 다양화 계획 ○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의 연계된 디자인으로 계획
외부공간 및 조경	단지 내부	○ 주변 현황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 ○ 공원로, 새말로16길은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○ 돌봄센터와 연계하는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
스카이라인	단지 내·외	<ul> <li>○ 도림천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, 입체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동의 높이는 다양화</li> <li>○ 북서측 주동은 미래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영향 등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계획</li> </ul>

- 마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- 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공개공지	새말로-공원로변 교차부	<ul> <li>열린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</li> </ul>	-
전면공지	획지1, 2	· 건축한계선에 의한 차도형, 보도형 전면공지 확보	-

## 2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	비고
차량출입구	공원로6가길변	∘ 단지 내 차량 출입구로 진·출입 가능	도면 참조

# 3) 환경관리계획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의 반영사항	비고
비오톱	비오톱보전 등급 향상	0	• 비오톱유형평가 4~5등급, 도로 및 개별비오톱 등급은 도로, 평가제외로 조사됨	<ul> <li>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</li> </ul>	-
생태 네트워크	녹지연결성 확보	0	<ul> <li>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수목 외 특별한 수목형태는 분포하지 않음</li> </ul>	·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	-
동·식물상	동·식물상보호	0	<ul> <li>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·식물은 분포하지 않음</li> </ul>	•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	-
자연환경자산	자연환경 보전	-	• 계획지구 내 보호지역 없음	-	-
토지이용	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	0	·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	。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 계획 수립	-
토양	토양오염방지	0	<ul><li>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관련기준 만족</li></ul>	•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	-
지형·지질	지형변화 최소화	0	·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	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	-
물순환, 수리·수문	생태면적률 30%	0	<ul><li>생태면적률 계획 확인</li><li>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 확인</li></ul>	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률     증가 계획 수립	-
수질	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	0	<ul> <li>주변 수질측정망의 수질 상태 확인결과 BOD 기준 a(매우좋음)~IV(약간나쁨)등급</li> <li>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</li> <li>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</li> </ul>	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   공사시 발생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  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되도록     저감방안 수립	-
바람	바람길 확보	0	•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	<ul> <li>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</li> </ul>	-
열	열환경 영향 최소화	0	·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	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    적용	-
대기질 미세먼지	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	0	<ul> <li>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</li> </ul>	<ul> <li>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</li> </ul>	-
온실가스	온실가스 저감	0	·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	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,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·재생에너지 확보	-
에너지	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0	<ul> <li>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</li> </ul>	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    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	-
친환경적 자원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0	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	해당 자치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	-
소음 및 진동	규제기준 만족	0	<ul><li>공사시 소음·진동 영향 예상</li><li>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</li></ul>	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 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	-
경관	Skyline 보전	0	<ul> <li>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</li> <li>예상</li> </ul>	•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	-
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확보	0	• 계획지구 주변 휴식·여가공간 현황	<ul> <li>주민 휴게공간, 놀이터 등의 휴식 및</li> <li>여가공간 확보 계획 수립</li> </ul>	-
일조	일조 침해 최소화	0	<ul> <li> 계획지구: 제3종일반주거지역</li> <li> 계획지구 인근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 지역 등</li> <li> 일부 일조영향 예상</li> </ul>	• 관련규정(「건축법」, 「서울시 조례」)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	-

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의 반영사항	비고
보행 친화공간	보행공간 계획수립	0	·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	•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	-
전파장해	전파장해 영향 저감	1	∘ 해당 사항 없음	-	-
인구	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	_	∘ 해당 사항 없음	-	-
주거	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	-	∘ 해당 사항 없음	-	-
주거	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	ı	· 해당 사항 없음	-	-

- 4)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 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 (처분)하여야 한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용적률의 50%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-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, 마감, 생활환경(채광, 조망) 등을 동일(유사)하 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·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 하며,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, 조합원의 동·호수 선정 이전 또 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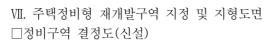
#### ■ 주택의 규모별 비율(정비계획)

건립규모	전체	구성비	조합원 및	기부채납	공공주택 세대수	공공주택 ㅂ	율(%)
(전용면적 기준)	세대수	(%)	일반분양	임대주택	궁중구역 세네ㅜ	전체세대수대비	전체비율
합계	522	100.0	453	17	52	10.0	100.0
44㎡형	52	10.0	32	-	20	3.8	38.5
59㎡형	206	39.4	164	17	25	4.8	48.1
74㎡형	47	9.0	42	-	5	1.0	9.6
84㎡형	181	34.7	179	-	2	0.4	3.8
95m³ 형	33	6.3	33	-	-	-	-
126㎡형	3	0.6	3	-	-	-	-

Ⅲ. 2024년 제12차('24. 11. 26.)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: 수정가결

구 분	심의 결과		심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		수정 사항	<ul> <li>○ 용적률 계획: 기준 210%, 허용 238.6%, 상한 252.6%, 법적상한 300%</li> <li>○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: 열린단지 5%, 층간소음해소 5%, 돌봄시설 5%, 방재안전 5%</li> <li>○ 순부담: 861.34㎡</li> <li>○ 높이계획: 121.5m(39층)이하 ※ 조건사항 반영</li> <li>에대수: 522세대(임대주택 69세대)</li> <li>※기부채납 임대주택 17세대, 법적상한 소형임대 52세대</li> <li>○ 건축한계선: (새말로변) 획지1 4m, 획지2 4m</li> </ul>	<ul> <li>▶ 심의결과 "수정사항"을 정비계획 결정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음</li> <li>○ 용적률 계획: 기준 210%, 허용 238.6%, 상한 252.6%, 법적상한 300%</li> <li>○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: 열린단지 5%, 층간소음해소 5%, 돌봄시설 5%, 방재안전 5%</li> <li>○ 순부담: 861.34㎡</li> <li>○ 높이계획: 121.5m(39층)이하</li> <li>※ 조건사항 반영</li> <li>○ 세대수: 522세대(임대주택 69세대)</li> <li>※기부채납 임대주택 17세대, 법적상한 소형임대 52세대</li> <li>○ 건축한계선: (새말로변) 획지1:4m, 획지2:4m</li> </ul>	반영
제12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	수정 가결		○ 정비계획상 높이계획은 획지 간 높이 차이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	<ul> <li>▶ 수정가결 요청안은 최고층수 39층으로 요청하였으나 획지 간 높이 차이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최고층수 34층 내외로 높이 조정함</li> </ul>	반영
		조건	○ 배치계획은 신속통합기획 자문(안)을 바탕으로 자문의견 보완 검토	<ul> <li>바차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안을 바탕으로 보완함</li> </ul>	반영
		사항	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한 공간적범위 계획은 삭제	▶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한 공간적범위 계획은 삭제토록 함	반영
			○ 획지간 지하연결통로를 위한 점용하가는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통합할 경우에 한해 구청과 협의 및 검토할 것	▶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통합할 경우에 한해 획지간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도록 구로구와 협의 및 점용허가를 받도록 함	추후 반영

- IV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- 1. 정비구역 결정도(신설)
- 2. 정비계획 결정도(신설)
- 3.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- 4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- 5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신설)
- 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V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: 생략
- VI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8), 구로구주택과(☎02-860-2941)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□정비계획 결정도(신설)



